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5 년 6 월 3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러셀대전학원(교습소)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오원석				전화번호	042-381-2020	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국어	고등	월 4일 (1400분)	300,000원	-	-	-	-	-	-	300,000원
국어	고등	월 3일 (840분)	160,000원	72,000원	-	-	-	-	-	232,000원
국어	고등	월 4일 (1200분)	200,000원	72,000원	-	-	-	-	-	272,000원
국/영 /수/탐	고등	월 1회	-	23,000원	-	-	-	-	-	23,000원
국/영 /수/탐	고등	월 1회	-	66,000원	-	-	-	-	-	66,000원
국/영 /수/탐	고등	월 2회	-	66,000원	-	-	-	-	-	66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5 년 6 월 3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러셀대전학원(교습소)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오원석				전화번호	042-381-2020	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논술	고등	월 4일 (1,200분)	250,000원	-	-	-	-	-	-	250,000원
수리	고등	월 4일 (1,050분)	225,000원	90,000원	-	-	-	-	-	315,000원
수리	고등	월 3일 (840분)	160,000원	-	-	-	-	-	-	160,000원
수리	고등	월 4일 (1,200분)	200,000원	-	-	-	-	-	-	200,000원
수리	고등	월 4일 (1,680분)	306,000원	-	-	-	-	-	-	306,000원
수리	고등	월 4일 (1,680분)	320,000원	-	-	-	-	-	-	320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5 년 6 월 3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러셀대전학원(교습소)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오원석				전화번호		042-381-2020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 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 비	재 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수리	고등	월 4일 (1,400분)	300,000원	-	-	-	-	-	-	300,000원
영어	고등	월 4일 (1,400분)	300,000원	-	-	-	-	-	-	300,000원
영어	고등	월 3일 (840분)	160,000원	-	-	-	-	-	-	160,000원
영어	고등	월 4일 (1,200분)	238,000원	-	-	-	-	-	-	238,000원
국/수/영 /사탐(2)	고등	월 24일 (5,040분)	1,080,000원	-	-	-	-	-	-	1,080,000원
국/수/영 /과탐(2)	고등	월 24일 (5,040분)	1,080,000원	-	-	-	-	-	-	1,080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5 년 6 월 3일 현재

학원 (교습소)명		러셀대전학원 (교습소)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오원석				전화번호	042-381-2020	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 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국/수/영 /사탐(2)	고등	월 24일 (5,760분)	1,160,000원	-	-	-	-	-	-	1,160,000원
국/수/영 /과탐(2)	고등	월 24일 (5,760분)	1,160,000원	-	-	-	-	-	-	1,160,000원
탐구	고등	월 4일 (1,400분)	300,000원	-	-	-	-	-	-	300,000원
탐구	고등	월 3일 (840분)	120,000원	-	-	-	-	-	-	120,000원
탐구	고등	월 3일 (840분)	160,000원	-	-	-	-	-	-	160,000원
탐구	고등	월 3일 (840분)	170,000원	-	-	-	-	-	-	170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25 년 6 월 3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러셀대전학원(교습소)								
위 치	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								
설립 운영자		오원석				전화번호		042-381-2020		
교습과목	수강대상	월 총 교습일수	교습비 (이용료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 비	재 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탐구	고등	월 4일 (1,200분)	200,000원	-	-	-	-	-	-	200,000원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		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		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			